의 안 번 호			제	ই
의		결	2024	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 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노후·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(안 제3조제1항)
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·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
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
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)으로 완화

나.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(안 제3조제2항)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#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"3분의 2 이상일 것"을 "100분의 60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 이상일 것"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"3분의 2 이상일 것"을 "100분의 60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이상일 것"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"3분의 2 이상일 것"을 "100분의 60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이상일 것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가목2)본문 중 "3분의 2 이상일 것"을 "100분의 60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이상일 것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가목2)본문 중 "3분의 2 이상일 것"을 "100분의 60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이상일 것"으로 하고, 같은 2)단서를 삭제하며.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이하 "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"이라

한다)에 반영된 사업시행구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"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이하 "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"이라 한다)"을 "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	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
지역)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	지역) ①
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노후·불	
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	
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)"이	
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	
지역을 말한다.	
1. 자율주택정비사업: 빈집밀집	1
구역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	
역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	
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	
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	
업의 시행구역, 「국토의 계획	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	
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,	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	
제20조·제21조에 따라 정비	
예정구역 • 정비구역이 해제된	
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	
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	
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	
정비구역, 「도시재생 활성화	
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	

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 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 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 특별자치도 또는 「지방자치 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 울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 상 대도시의 조례(이하 "시· 도조례"라 한다)로 정하는 지 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지역 가. 노후 ·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일 것. 다만, 소규모주택정 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 00분의 15 범위에서 시ㆍ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. 나. · 다. (생략)

2. 가로주택정비사업: 가로구역
 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
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
 가. (생략)

나. 노후 • 불량건축물의 수가

가
<u>100분의 60(소</u>
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
경우에는 100분의 50) 이
<u>상일 것</u> <단서 삭제>
나.•다. (현행과 같음)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2
2  
2

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<u>3분의 2 이상</u> 일 것. 다만, 소규모주택정 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 00분의 15 범위에서 시·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.

다. (생략)

3. 소규모재건축사업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7호 의 주택단지(이하 "주택단지" 라 한다)로서 하나의 주택단 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(주택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 우에는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 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

가. (생 략)

나.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<u>3분의 2 이상</u> 일 것

<u>100분의 60(소</u>
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
 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
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
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
<u>경우에는 100분의 50) 이</u>
<u> 상일 것</u> <u>&lt;단서 삭제&gt;</u>
다. (현행과 같음)
3
가. (현행과 같음)
나
100분의 60(소
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

다. (생략)

- 4. 소규모재개발사업: 다음 각 목의 지역
  - 가.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 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 이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」, 「철도산업발전기본 법, 또는 「도시철도법」 에 따라 건설 · 운영되는 철도역(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)의 승강장 경계 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 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 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. 다만, 승강장 경계로부터 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 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 ·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로 증감할 수 있다.

1) (생략)

	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
	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
	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
	경우에는 100분의 50) 이
	<u> 상일 것</u>
	 다. (현행과 같음)
4.	
_	
	フト
	<b>/ .</b>
	· 1) (현행과 같음)
	1/ (ひつつ ) 色ロ/

2) 노후・불량건축물의 수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<u>3분의</u> 2 이상일 것. 다만,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 의 25 범위에서 시·도조 레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.

3) (생 략) 나. (생 략)

-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・군계 획시설인 도로(같은 법 제32 조제4항에 따라 신설・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)로서 폭이 4 미터(제1항제2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

Δ)
<u>100</u> 분의
60(소규모주택정비 관리
지역 또는 「도시재정비
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
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
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
<u>의 50) 이상일 것</u> <단서
<u>삭제&gt;</u>
3) (현행과 같음)
나. (현행과 같음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
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)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<단서 신설>

### ③ • ④ (생 략)

제34조의2(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 제 실보상) ① 법 제43조의2제4항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 획(이하 "소규모주택정비관리 계획"이라 한다) 승인고시일부 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 5조의2제2항 단서 및 「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4 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 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같은 호 각 목(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<u>다만, 소규</u>
모주택정비 관리계획(이하
"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"이
라 한다)에 반영된 사업시행
구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<u>니한다.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34조의2(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
실보상) ① 소규모주택정비관
리계획

# 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
연 락 처

(044) 201 - 4944